

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023-17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생활 속 정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정원 개방 등의 활동 장려, 시민정원사 육성 및 활용, 정원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군수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

나.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을 정함(안 제4조)

- 1)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, 정원문화 관련 교육,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등
- 2)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장려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

다. 정원산업의 육성 지원을 정함(안 제5조)

- 1)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보급·관리, 기술지도 및 교육, 정보교류 및 협력,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등
- 2) 정원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

라. 시민정원사 육성 등을 정함(안 제6조)

- 1) 시민정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또는 위탁 운영
- 2) 시민정원사 교육에 드는 경비 지원

마. 정원 전문가와 시민정원사의 활용 지원을 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·제28조
- 2)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- 3)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6, 제18조의8

나. 예산조치: 2023년도 예산 20백만원 확보예정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3. 2. 1.~2. 20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붙임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정원문화(군민이 정원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·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확산하고 정원산업을 육성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정원문화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, 조사·연구, 전문인력 양성, 국제교류 등에 노력해야 한다.

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제4조(정원문화의 확산 지원)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.

1.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
2. 정원문화 관련 교육
3.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
4.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·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정원산업의 육성 지원) ① 군수는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

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·수집·보급 및 관리
2.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
3.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
4.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
5.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
6.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
7. 그 밖에 정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시민정원사 육성 등) ① 군수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·관리 및 보전·전시하기 위한 지식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시민정원사 교육을 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④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정원 전문가와 시민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) ①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나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,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정원 전문가나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장려 할 수 있다.

② 군에서 주최하는 정원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 전문가 또는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: 간판 등 홍보물 설치 및 정원 교육 지원

나. 관련 조문

- 1)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(안 제4조)
- 2) 정원산업의 육성 지원(안 제5조)
- 3) 시민정원사 육성 등(안 제6조)

2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1차연도 (2023)	2차연도 (2024)	3차연도 (2025)	4차연도 (2026)	5차연도 (2027)	합계
균비	20	20	20	20	20	100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2023년도 총예산 20백만원
2. 간판 등 홍보물 지원: 15백만원
3.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: 5백만원

작성자 산림과장 강신여